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8 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박성준 • 박 정 • 허종식

박상혁 • 박홍배 • 박희승

문대림 • 백혜련 • 박홍근

민병덕 • 이훈기 • 허 영

노종면 · 김영진 · 안도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,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, 초저 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,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습 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5 9조의4제3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300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 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	③
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	
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	
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	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	
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	
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	
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	
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	
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	
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	
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	
공제하지 아니한다.	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・	1
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	
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	
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	
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	
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	·.

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2.·3. (생략) ④ ~ ① (생략)

۲۸۸π), فا
<u>500만원</u>
.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마.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하</u>
여 「학원의 설립・운영
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
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
<u>비</u>

④ ~ ① (현행과 같음)